

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시범기업 지원사업 공모 안내

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시범기업을 모집합니다!



1. 사업취지

- 건설업에 종사하는 현장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모델 개발을 촉진 및 확산
-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지원예정

2. 신청대상

-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·허가·등록을 받은 건설사업주
- 금년 6월말 이전에 공사가 개시되고,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함

3. 지원사업 개요

- 신청대상 : 건설현장 생산직근로자를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(최소 10명 이상) 또는 건설생산직 직업훈련수료자를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(최소 10명 이상)

*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(홈페이지 게재)을 참조, 신청기한 내 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

■ 지원내용

구 분	세 부 내 용
고용환경 개선비용	1개업체당 1,500만원 이내 • 고용관리 전산화,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(예: 식당, 탈의실, 휴게시설, 화장실 등) 기타 복지시설 설치 등 소요비용
계속고용 인원 인건비	1개업체당 평균 5,000만원 내외 • 고용인원 및 고용기간에 따라 조정

■ 지원절차

- 사업신청서 제출 → 심사위원회 참석 및 설명 → 선정 결과 통지 → 사업지침에 따라 비용 지원

4. 신청방법

■ 신청방법

-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

■ 접수기간 : 2010. 3. 8 ~ 2010. 3. 30

※ 신청서식 및 사업지침은 노동부(www.molab.go.kr) 및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(www.cwma.or.kr) 공지 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
5. 제출서류

-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및 붙임 서류 1부.
- 건설사업주단체 추천서(희망하는 경우에만) 1부.

6. 접수처

■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: 02)6902-8465

※ 주소 : (우)427-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
정부과천종합청사 3동 2층

※ 찾아오시는 길



7. 기타사항

- 지원대상은 「심사위원회」에서 결정
- 선정결과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정된 기업은 개별통지
- 세부 사항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2010년 3월 8일

